



보도시점 (전매체) 3. 6.(수) 국무회의 종료시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에 대한 필요 사항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 이하 인천중기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실태조사의 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현황(안 제9조의21 제1항)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 ② 실태조사의 방법 :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의21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 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아울러,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안원호	(044-204-7890)
	담당자	사무관	유주현	(044-204-7901)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주무관	백재준	(044-204-7822)	
		책임자	신훈목	(032-450-1151)	
		담당자	한지연	(032-450-11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9조의21(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u>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유통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통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 class="list-item-l1">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한 사항</p> <p class="list-item-l1">2. 조사기획 및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p> <p class="list-item-l1">3.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가맹점 및 법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p> <p>② 유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 class="list-item-l1">1.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자 및 사용처의 현황</p> <p class="list-item-l1">2.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및 환전 현황</p> <p class="list-item-l1">3.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환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할 필요가 있는 사항</p>